

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김준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98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1.

발 의 자 : 김준형 · 서왕진 · 차규근
박은정 · 황운하 · 김재원
신장식 · 정춘생 · 김종민
이재강 · 김선민 · 정혜경
강경숙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구호인력의 발굴·육성·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해외긴급구호 종사자가 참혹한 재난 현장이나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 등에 직접 노출될 수 있어 이들의 안전대책과 심리지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대책에 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.

이에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해외긴급구호인력의 안전대책 및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1항제2호).

법률 제 호

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해외긴급구호인력의 발굴·육성·교육훈련·안전대책·심리지원

제12조제3항 중 “함에 있어서”를 “할 때에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) ① 외교부장관은 해외재난에 대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민·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의 종류·규모·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	제6조(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해외긴급구호인력의 발굴·육성·교육훈련</u>	2. <u>해외긴급구호인력의 발굴·육성·교육훈련·안전대책·심리지원</u>
3. ~ 8. (생략)	3. ~ 8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2조(해외긴급구호대장) ① .	제12조(해외긴급구호대장) ① 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해외긴급구호대장은 관할재외공관의 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피해국에서의 구호활동을 총괄하며, 해외긴급구호활동을 <u>함께 있어서</u> 현지에서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할 때에는</u> ----- -----

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. ④ (생 략)	----- ----. ④ (현행과 같음)
--	---